

# 전기재난 안전점검 협약서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(이하 "구청"이라 한다)과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울특별시북사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는 전기재난 안전점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구청과 협회는 축적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 사고방지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,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(기본원칙)

구청과 협회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상호 의사를 존중하고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.

## 제3조(협약사항)

구청과 협회는 전기 사고방지 및 재난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「전기설비」의 사고방지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지원 등 업무 협조.
2. 「전기설비」의 사고방지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활동, 관련 자료의 제공 및 정보 교환.
3. 「전기설비」에 대한 재난관리, 안전관리, 안전점검을 함께 있어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.

## 제4조(협의조정)

본 협약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 제5조(기밀유지)

구청과 협회는 상호 협력을 통해 인지한 제반 사항을 상대 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, 이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동일하다.

### 제6조(법적사항)

본 협약은 구청과 협회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### 제7조(기술지원)

본 협약 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지원은 무상으로 한다. 단, 필요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여 자재비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8조(효력)

본 협약은 구청과 협회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 당사자중 일방의 해지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

### 제9조(기타)

구청과 협회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며,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12월 11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구청장 문석진

한국전기기술인협회

서울특별시북사회

회장 김남천

# 전기재난 안전점검 협약서

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울특별시북시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(이하 "구청"이라 한다)은 전기재난 안전점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협회와 구청은 축적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 사고방지 및 재난예방을위하여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,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(기본원칙)

협회와 구청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상호 의사를 존중하고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.

## 제3조(협약사항)

협회와 구청은 전기 사고방지 및 재난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「전기설비」의 사고방지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지원 등 업무 협조.
2. 「전기설비」의 사고방지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활동, 관련 자료의 제공 및 정보 교환.
3. 「전기설비」에 대한 재난관리, 안전관리,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.

## 제4조(협의조정)

본 협약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 제5조(기밀유지)

협회와 구청은 상호 협력을 통해 인지한 제반 사항을 상대 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, 이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동일하다.

### 제6조(법적사항)

본 협약은 협회와 구청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### 제7조(기술지원)

본 협약 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지원은 무상으로 한다. 단, 필요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여 자재비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8조(효력)

본 협약은 협회와 구청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 당사자중 일방의 해지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

### 제9조(기타)

협회와 구청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며,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12월 11일

한국전기기술인협회  
서울특별시북사회  
회 장 김 남 천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
구청장 문 석 진